

용어사전

방재와 보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사용되는 용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생소한 분야로 느껴지는 예가 많다. 그래서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돋기 위해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전문용어를 해설, 소개한다. 편집자

방재용어

• 질석

운모가 풍화 또는 열수변질되어 생성된 것으로 탈수시 박리 팽창하여 거머리처럼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 색은 금색, 은색, 갈색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산, 홍성, 보령, 청양, 예산 등지에서 산출된다.

특히 질석은 불연성 및 내화성으로 내화도는 $1,400^{\circ}\text{C} \pm 50^{\circ}\text{C}$ 이며 안전사용온도는 $1,150^{\circ}\text{C}$ 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단열성, 경량성, 절연성, 흡음성, 방부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약 $1,300^{\circ}\text{C}$ 정도로 가열하였을 때 팽창된 팽창질석은 소방 범상 간이소화용구로 인정되고 있다.

소방법에 의하면 삽을 상비한 160 l 이상의 것 1포를 1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 팽창진주암

진주암, 흑요석, 송지석 또는 이와 유사한 파리질화산암을 적당한 점도로 분쇄하여 급속 가열 팽창시킨 것으로 용도나 물성, 화학적 성분이나 제조공정 등이 팽창질석과 거의 같으며 이것 역

시 소방법에서 간이소화용구로 인정되고 있다.

• 최소점화에너지

가연성 혼합기체를 불꽃으로 점화할 경우 점화에너지가 충분하면 화염이나 폭발이 일어나나 점화에너지를 점차 감소시키면 폭발은 일어나지 않고 화염만 계속 발생한다. 더구나 점화에너지를 어느 임계치 이하로 낮추면 화염마저도 점화되지 않고 불꽃 에너지는 열전도에 의해 간단히 소멸된다. 이 임계치를 최소점화 에너지라 하며, 연료의 종류나 농도, 공기중의 산소농도, 압력, 온도, 불꽃의 성질, 점화위치에서의 유속, 전극의 형상과 간격 등 많은 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 분해연소

석탄이나 목재 같은 것이 연소 초기에 화염을 내면서 연소하는 과정을 분해연소라 하며 탄소(C) 수가 많은 불포화탄화수소, 환상 탄화수소의 석탄이나 중유의 분해가스는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매연이 발생되기 쉽다.

• 표면연소

코오크스나 목탄 같은 것이 고온으로 되면 그 표면이 붉어지면서 연소한다. 이처럼 연소반응이 고체표면에서 발생하는 것을 표면연소라 한다.

• 증발연소

석유류와 같이 화염으로부터 열이 유연에 전해져서 석유류가 증발하고 그 증기와 산소가 혼합하여 연소하면서 화염을 형성하는 연소과정을 증발연소라고 한다.

• 확산연소

연소면에 대해 연료의 가스와 산소의 공급이 확산에 의하여 이루어 진 때에는 확산연소가 된다. 증발연소, 분해연소의 대부분은 확산연소라 볼 수 있다.

• 연소실부하

연료를 완전연소시켰을 때 연소실 1m^3 당 1시간에 발생된 열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text{Kcal}/\text{m}^3 \cdot \text{h}$ 로 나타낸다. 부하의 크기는 사용 버너의 형식과 가열목적, 가열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용어

• 전부보험: 전액보험(full insurance)

보험가액의 전부를 보험가입하여 그것이 보험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가입방법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다.

전부보험에서는 소손해부담보등의 특약조건이 없는 한, 손해의 전액을 보험자가 보상하게 된다.

• 비례보상주의(principle of average)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는 다음 등식과 같이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보험가입비율)로 손해를 보상한다는 주의이다.

$$\text{손해보상액} = \frac{\text{보험금액}}{\text{보험가액}} \times \text{손해액}$$

이러한 보상액의 산정방식은 비례적 책임분담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 한다. 이 비례전보주의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항상 손해의 전액을 보상하는 주의를 실손보상주의라고 한다.

전액보험,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주의에 의하더라도 손실액의 전액이 보상되므로 실손보상주의에 의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나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일부 밖에 보상되지 않으므로 잔여의 손해액은 피보험자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 작업할증

건물내에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경우 그 건물 및 수용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보통물건 기본요율은 지역별로 정하여져 있어 그 지역의 평균적위험도가 기준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표준적 건물로부터 자화위험도가 높은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용도할증으로서 직업할증이 정해져 있다. 현행 화재보험요율서에서는 일반 물건중 시장, 음식점 등 47종의 직업에 대하여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 작업할증

일반물건의 작업장 및 그 수용동산에 대해 부가되는 할증으로 공장물건에 해당되지 않은 소규모의 생산가공을 하는 물건에서 작업에 수반하는 특유한 위험, 예를들면 연소하기 쉬운 원재료, 제품의 퇴적, 모터의 가열 또는 사용약품의 자연발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현행 요율서에서는 ①동력설비 1kw 이상 20kw 미만, ②전력설비 5kw 이상 40kw미만, ③작업인원수 3인 이상 20인 미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업할증을 부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험등급은 각 작업의 종류에 따라 28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 일부보험 (under insurance)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보험계약자가 당초부터 의식적인

경우와 계약체결후에 물가의 동반 등의 이유로 가액이 상승한 경우 등도 있다.

일부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 초과보험(over insurance)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초과보험은 보험가액으로서 평가될 수 있을 피보험의 이익을 구하는 손해보험에만 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는 상법(제669조)이나 보통약관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초과된 부분은 무효이다.

•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 피보험자 및 피보험인이 억이 동일하며 또 어느 시점에 있어서 보험기간을 공동으로 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를 넓은 의미의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좁은 의미의 중복보험이라 한다.

중복보험이라는 용어는 분담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만을 분담계약이라 하며 보험자가 동일한 목적에 대하여 체결한 2개 이상의 보험계약도 중복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❷)